

2026. 6.

EU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오프라인 저장은 사적복제의 대상이 아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연구교수
이일호

1. 도입

2026년 4월 16일 EU사법재판소(CJEU)는 네덜란드 대법원(Hoge Raad)이 제기한 선결적 부탁 사건에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하는 이른바 “오프라인 스트리밍 복제본(offline streaming copy)”이 정보사회 지침(Directive 2001/29/EC) 제5조 제2항 (b)의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¹⁾ 본 판단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적복제에 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범주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 이용 구조가 “복제본 보유 중심”에서 “접근/이용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네덜란드 저작권법 제16c조에 따라 사적복제 보상금 징수를 담당하는 Stichting de Thuiskopie(SdT) 및 Stichting Onderhandelingen Thuiskopievergoeding(SONT)는 컴퓨터 기기 제조사인 HP Nederland BV 및 Dell BV에 대하여 그들이 판매하는 기기가 “오프라인 스트리밍 복제본” 생성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사적복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²⁾. “오프라인 스트리밍 복제본”이란 Spotify, Netflix 등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자가 인터넷 연결 없이 오프라인으로 음악 또는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도록 자신의 기기에 저장한 복제본을 의미한다. 판결문에 제시된 기술적 특성에 의하면³⁾, 이용자는 앱 내에서 다운받을 콘텐츠를 선택하지만 저장 위치는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지정한다.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으며, 복제본은 서비스 제공자만 복호화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저장된다. 이에 따라 복제본은 앱 내에서만 재생할 수 있으며, 구독이 종료되거나 권리자가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면 자동 삭제된다.

제1심 법원은 2019년 9월 18일 SdT 등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법원은 2022년 3월 22일

1)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2026. 4. 16. 선고 C-496/24 판결, Stichting Onderhandelingen Thuiskopievergoeding and Stichting de Thuiskopie v HP Nederland BV and Others, ECLI:EU:C:2026:296, <<https://infocuria.curia.europa.eu/tabs/document/C/2024/C-0496-24-00000000RP-01-P-01/ARRET/319273-EN-1-html>>

2) CJEU, Judgment of 16 April 2026, C-496/24, para 11

3) CJEU, Judgment of 16 April 2026, C-496/24, paras 15~16

오프라인 스트리밍 복제본이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적복제 보상금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⁴⁾. 이에 SdT 등이 상고했고, 네덜란드 대법원은 본 사건을 CJEU에 부탁한 것이다.

2) 선결적 부탁의 내용

네덜란드 대법원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했다⁵⁾.

- 3단계 테스트(정보사회 지침 제5조 제5항)에 비추어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 오프라인 스트리밍 복제본이 동 지침 제5조 제2항 (b)상 “자연인이 사적이용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상업적 목적이 아닌 방식으로 행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 높은 수준의 저작권 보호,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공정한 균형 및 회원국에 의한 일관되고 기술중립적인 제한규정 적용이라는 ‘지침의 목적’이 오프라인 스트리밍 복제본을 사적복제에서 제외하는 국내 규제를 금지하는지
- 권리가 복제본 1건당 보상금을 받는지 또는 재생 횟수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지 위 답변에 영향을 미치는지

CJEU는 제5조 제5항이 제한규정의 “실질적 내용”이 아니라 “적용 조건”만을 정한 것이라는 Adam 법무관의 권고(C-435/12)를 재확인하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제5조 제2항 (b)의 해석 문제로 좁혔다⁶⁾.

3) 재판소의 판단

법원은 우선 제5조 제2항 (b)의 사적복제 제한규정이 제2조의 복제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는 해당 제한규정이 공중전달 중 한 유형인 이용제공(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에도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⁷⁾, 이를 토대로 오프라인 스트리밍 복제본의 제공이 복제인지 이용제공인지 검토하였다. Tom Kabinet 판결(C-263/18), VCAST 판결(C-265/16) 등 기존 판례에 따라 공중전달의 두 요건, 즉, 송신행위 및 공중 여부를 검토한 결과, 오프라인 스트리밍 기능을 통하여 구독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장소 및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고, 동일 저작물에 다수의 구독자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보았다⁸⁾. 이에 따라 오프라인 스트리밍 복제본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제3조 제1항의 공중에 대한 이용제공에 해당하며, 이는 제2조의 복제가 아니므로 제5조 제2항 (b)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고 한다⁹⁾.

4) CJEU, Judgment of 16 April 2026, C-496/24, para 12

5) CJEU, Judgment of 16 April 2026, C-496/24, para 17

6) CJEU, Judgment of 16 April 2026, C-496/24, paras 20-23

7) CJEU, Judgment of 16 April 2026, C-496/24, para 25

8) CJEU, Judgment of 16 April 2026, C-496/24, para 36

9) CJEU, Judgment of 16 April 2026, C-496/24, paras 37-38

또 설령 회원국 법원이 이를 복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적복제에 해당하려면 자연인 이용자가 적법한 출처에 접근했어야 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복제해야 하며, 복제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¹⁰⁾. 그러나 오프라인 스트리밍 복제본의 경우 출처는 서비스 제공자에 속하고, 제공자가 복제본을 직접 생성하여 기기에 저장하며, 이용자는 앱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 뿐 복제본 자체를 통제할 수 없다¹¹⁾. 또한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재복제, 외부 저장, 전송 등이 차단되고, 권리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복제본이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로써 권리자의 통제권은 사실상 유지된다¹²⁾. 따라서 이러한 복제본은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

법원은 라이선스에 의한 보상이 복제본별로 산정되든 재생 횟수별로 산정되든 그 사실 자체가 사적복제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보았다¹³⁾. 결정적인 것은 권리자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저작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계약상 이를 허락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이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된다면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통상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보상이 필요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적복제 보상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¹⁴⁾. 반대로 권리자가 기술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이용자가 복제본을 자유롭게 통제하거나 보유하게 된 경우라면, 권리자의 개별 허락은 사적복제와의 관계에서 법적 영향이 없고 오로지 사적복제 보상금 문제만이 남는다¹⁵⁾.

3. 의의 및 시사점

첫째, 복제에 관한 유연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특히 복제를 기술적으로만 평가하지 않았고, 권리자의 허락하에서만 접근 가능한 경우라면 공중전달만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기기에 미디어 파일이 실제로 저장되더라도 제공자의 폐쇄적 기술환경 하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면, 이는 복제가 아닌 ‘이용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¹⁶⁾.

둘째, 사적복제 보상금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본 사안에서 다투어진 보상금은 수백만 유로 규모로, HP, Dell 등 하드웨어 제조사는 오프라인 스트리밍 기능을 근거로 하는 추가 부담을 면하게 되었다. 권리자는 스트리밍 플랫폼과의 라이선스 협상을 통한 보상에 만족해야 하며 기기 보상금을 통한 간접적 사용료 회수는 불가능해졌다. 몇몇 회원국에서는 여전히 녹화 기능이 있는 셋톱박스에

10) CJEU, Judgment of 16 April 2026, C-496/24, paras 41–42

11) CJEU, Judgment of 16 April 2026, C-496/24, paras 42–43

12) CJEU, Judgment of 16 April 2026, C-496/24, paras 45–47

13) CJEU, Judgment of 16 April 2026, C-496/24, para 57

14) CJEU, Judgment of 16 April 2026, C-496/24, paras 55–56

15) CJEU, Judgment of 16 April 2026, C-496/24, para 58

16) <https://legalblogs.wolterskluwer.com/copyright-blog/streaming-without-copying-the-cjeu-redefines-private-use-in-stichting-de-thuiskopie-c-49624/>

보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논평가는 재판소의 논리가 동 셋톱박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존 사적복제 보상금 체계 전반에 재검토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 예상한다¹⁷⁾.

셋째,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여부가 결정적 기준으로 부상했다. 권리자가 조치를 통해 사실상 통제권을 유지하는 한 사적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점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기술조치 적용 여부가 보상금 부과 정당성을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 <https://infocuria.curia.europa.eu/tabs/document/C/2024/C-0496-24-00000000RP-01-P-01/ARRET/319273-EN-1-html>
- <https://legalblogs.wolterskluwer.com/copyright-blog/streaming-without-copying-the-cj-eu-redefines-private-use-in-stichting-de-thuiskopie-c-49624/>
- <http://www.ictrechtswijzer.be/en/do-offline-streaming-copies-fall-under-the-private-copy-fee/>

17) <http://www.ictrechtswijzer.be/en/do-offline-streaming-copies-fall-under-the-private-copy-fee/>